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

발의연월일: 2020. 6. 9.

발 의 자:정진석·구자근·김석기

김선교 • 김정재 • 김희국

박덕흠 • 박수영 • 이종성

임이자 · 서정숙 · 송석준

송언석 · 신원식 · 전봉민

정경희 · 정운천 · 조경태

조수진 · 최승재 · 황보승희

의원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

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개량 및 보수"를 "개량·보수 및 철거"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기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9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제7항"을 각각 "제27조 제8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하천시설 철거계획의 수립 등) ①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철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천시설 철거계획(이하 이 조에서 "철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철거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하천시설의 철거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 2. 하천시설의 철거가 농·어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3. 하천시설의 철거가 거주지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4. 하천시설의 철거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 평가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향 평가는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철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하천관리청은 철거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27조제5항 단서"를 "제27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제27조제5항 단서"를 "제27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9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6호의2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공청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 의 신설·증설·<u>개량 및 보수</u> -----<u>개량·보수 및</u>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u>철거</u>-----. 6. ~ 8. (현행과 같음) 6. ~ 8. (생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② (현행과 및 유지·보수) ①·② (생 략) 같음) <신 설> ③ 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천공사 를 시행하려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 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면 그 의견을 하천공사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hfrak{T}	\sim	$\widehat{10}$	(생	략)
$\langle O \rangle$	~~	ÚΨ	(7)	4)

-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생 략)
 -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⑧ (생 략)
 - ⑨ 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u>제27조제5항</u>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⑩ (생 략)
-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

<u>④</u> ~ <u>①</u> (현행 제3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27조</u>
<u>제6항</u>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⑧ (현행과 같
<u>о</u>)
9
<u>제27조제6항</u>
<u>제27조제6항</u>
<u>제27조제6항</u>
<u>제27조제6항</u>
<u>제27조제6항</u>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u>제27조제6항</u>
<u>제27조제6항</u>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27조제6항</u>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27조제6항</u>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27조제6항</u>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
 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 2. (생략)
- ⑤ (생략)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 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 제4항·제30조제8항에 따른 준 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 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 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u>.</u>
1. <u>제27조제8항</u>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6
<u>제27조제8항</u>
제32조의2(하천시설 철거계획의
수립 등) ① 하천관리청은 국
가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하천시설을 철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천시설 철거계획(이 하 이 조에서 "철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만, 시·도지사가 철거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하천시설의 철거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 2. 하천시설의 철거가 농·어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3. 하천시설의 철거가 거주지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4. 하천시설의 철거에 따른 환

 경 및 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

 평가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영향 평가는 환경부장관 또 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 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면 그 의견을 철거계획에 반영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 ③ ~ ⑤ (생 략)
-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

<u>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회의</u>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철거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7조제6항 단서</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27조제6항 단서

수를	하는	경우	-에	필.	요한	비	용
<u>0</u>	해당	시·도	의	부덕	計으를	1	한
다.							
제60조	(대행	공사	등	의	비용)	1
(생	략)						

② 제9조제1항(<u>제27조제9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 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9조 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 략)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7 ·② (생 략)
 -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 6. (생략)
 - 6의2. <u>제27조제5항</u>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 보수 업무

 제60조(대	 행공사	등의	비용)	 ①
(현행과 ②	· 같음)	- <u>제273</u>	조제10형 	<u>}</u>
제92조(권 • ② (현	········ 행과 같음 한의 위 현행과 집	음) 임·위 [*] 말음)		1
③				
1. ~ 6	. (현행고 1 <u>27조제</u>	과 같음	-)	
		-		